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454593 손해배상(저)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화
담당변호사 이재용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6.부터 2025.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만화영화 제작업, 완구(캐릭터 인형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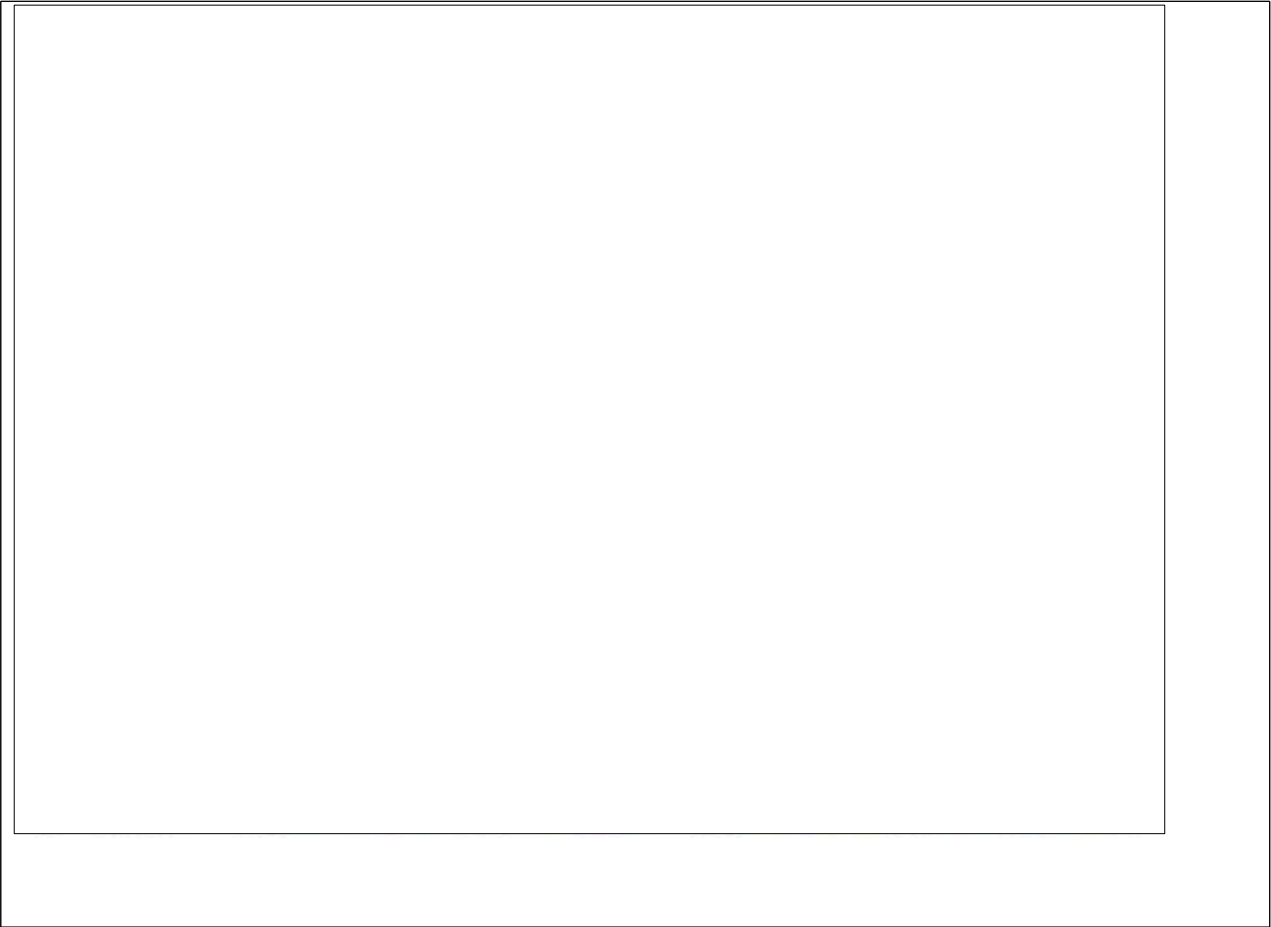
2)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네이버카페 'D'라는 곳에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응용미술저작물 제작

원고는 'E'이라는 애니메이션(이하 '이 사건 애니메이션'이라 한다)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미지로 아래와 같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 등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 각 저작물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저작물 이용 행위

피고는 2022. 1. 4.경부터 2024. 6. 20.경까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복제 이미지를 포함한 의류 등(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이라 한다)을 공중송신·판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 김미주에게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신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저작물은 그 무렵 김미주에게 신탁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원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기에 있음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 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변호사 김미주에게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원고의 응용미술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한 이미지가 포함된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공중송신·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등록된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일본 애니메이션인 'AO'나 'AP' 캐릭터를 표절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등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저작물과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에 복제된 이미지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구체적인 디자인이나 매우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각 형태는 기존의 캐릭터와 구별되는 저작자 나름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어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3, 11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에 복제된 이미지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항 기재 추정을 뒤집을만한 반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22. 1. 10.경 이 사건 피고 상품 중 일부가 '정품'인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아니에요 비공개진행해주세요"라고 답변한 점, 이 사건 애니매이션의 대중 인지도를 고려하였을 때 의류 도매업자인 피고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



더라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라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제4항).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침해된 원고의 저작물은 35개인 점, ② 피고의 저작권 침해기간은 2022. 1. 4.경부터 2024. 6. 20.경까지로 2년을 초과하는 점, ③ 피고는 위 ②항 기재 기간 중 다른 소매업자들에게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판매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의 유포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 계좌 내역 중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2022. 1.경부터 2024. 7.경까지의 피고 매출이 125,493,907원에 이르고 그중 40%에 해당하는 50,197,563원은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는바, 실제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AQ, AR라는 상인에게 의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AR가 2022. 6.경부터 2023. 10.경까지 피고에게 입금한 돈은 12,726,000원에 이르고, AQ은 2023.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이 사건 각 저작물이 복제된 이미지가 포함된 의류를 판매한 매출이 32,508,309원에 이르는 점¹⁾,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의 행위태양 및 이 사건에 드러난 주관적 인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21,000,000원(= 600,000원 × 이 사건 각 저작물 35개)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AQ이 판매한 의류가 모두 이 사건 피고 상품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피고가 AQ에게 판매한 수량이나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